

문화산업정책 및 관련 법규

문화산업정책환경분석

중국, 문화산업세수우대정책을 출범

2005년 8월, 문화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기간 경영성문화사업단위를 기업과 문화체제개혁시점 기업으로 바꾸는 경우 국가의 세수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국가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발표했다.

3부의 규정에 따르면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조건은 첫째, 외국에서 문화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경외 소득은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영화발행기업이 영화방송회사로 부터 받은 영화발행소득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둘째, 자연재해등불가항력 혹은 국가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여 조성된 문화단위에 대하여 허가를 거친 후 경영성 토지와 부동산의 도시농촌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셋째, 정부에서 부추기는 신규설립문화기업은 공상국에서 등록한 날자로 부터 시작하여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신규설립한 기업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등기등록하고 새롭게 설립된 문화기업으로 원래 있던 기업에서 분리되거나 개조, 자산이체, 합병, 이름을 변경하여 형성된 문화기업은 모두 신규 설립한 문화기업으로 볼 수 없다. 시범문화그룹의 핵심기업이 성원기업에 대하여 100% 지분을 통제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받은 후 기업소득세를 합병상납할 수 있다. 외국에서 문화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외국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디지털방송TV, 데이터 베이스, 전자출판물 등 연구개발, 생산, 전파에 종사하는 문화기업에 대하여 현행의 국가첨단기술기업세수우대정책에 부합될 경우, 대응한 세수우대정책을 통일적으로 향수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부추기는 문화기업의 범위에는 문예공연단체가 포함된다. 문화, 예술, 공연대리기업, 뉴스출판, 방송영화와 문화예술전시에 종사하는 기업 및 문화산업관련 영화, 인쇄, 발행, 네트워크, 음반등 업종.

애니메이션, 만화창작, 출판과 생산에 종사하고 애니메이션 제작과 발행에 종사하는 기업도 이번 새 정책이 중점으로 부추기는 업종에 속한다.

국가정책상 민영자본이 문화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격려한다.

2005년 <비공유제 자본이 문화산업에 진출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방송했다. <결정>은 비공유제 자본이 문화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격려, 제한과 금지 세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다. <결정>은 민영자본이 문화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명확히 격려하고 지분비례와 관련 분야 등 분야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제한을 진일보 줄인다. 민영자본이 일부 영역의 국유문화업체의 지분제개조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민영자본이 차지하는 지분을 제한수단으로 한다. 민영자본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뉴스매체와 뉴스홍보업 등 분야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결정>은 비공유제자본이 문예공연단체, 공연장소, 박물관과 전시회, 인터넷상의 서비스경영장소, 예술교육과 훈련, 문화예술중개, 관광문화서비스, 문화엔터테인먼트, 예술품경영, 애니메이션과 온라인게임, 광고, 영화 TV 제작발행, 방송영상기술개발운영, 영화관과 영화원선, 농촌영화방영, 신문판매, 음반제품판매, 포장 디자인 인쇄품인쇄등에 진출하는 것을 격려한다.

<결정>은 비공유제자본은 통신사, 신문사, 출판사, 방송국(소), TV방송국(소), 방송TV발사대(소), 중계방송국(소), 방송TV위성, 위성업라인소와 접속소, 마이크로파소, 감시국(소), 유선TV전송기간망등을 경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정보망을 이용하여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및 뉴스 사이트 등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잡지지면, 방송TV채널과 시간프레임 프로그램을 경영할 수 없다. 신문, 영화, TV, 음반제품 완제품 등 문화제품의 수입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가소유문물박물관에 진출할 수 없다.

중국, 정책을 출범시켜 문화혁신발전을 격려

2006년 중공중앙, 국무원은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여 문화영역에 대한 거시관리를 강화하고 문화행정관리부서와 소속문화기업사업단위의 관계를 합리화할 것을 요구했다. 효과적인 문화경제정책을 계속하여 실행하고 공익성문화사업,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혁신을 격려할 데 대한 정책을 제정하고 개선한다. 이와 동시에 각지에서는 개혁발전의 수요에 따라 본지방의 실정에 부합되는 관련정책을 제정한다.

중국문화산업정책의 심층 분석

문화경제정책은 당과 국가가 문화, 예술사업활동과 경제이익을 지도하고 조정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과 조치이다. 문화경제정책은 당과 국가문화방침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국가거시경제정책이 문화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체현이며 정부가 문화사업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그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문화사업이 번영발전하는 내적인 요구이다. 제15차 당대표대회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문화는 전국 각 민족인민을 집중시키고 격려하는 중요한 힘이고 종합적인 국력의 중요한 징표이다. ”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15”계획요강>은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문화경제정책을 개선하며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중국문화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1. 사회효과를 위주로 하고 사회효과와 경제효과를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문화산업은 보다 훌륭하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며 경제효과를 높이며 사회효과와 경제효과를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결합물이다.
2.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건립하는 요구에 부합된다. 낡은 문화사업의 발전방식을 개혁하고 사회주의시장체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문화산업발전의 길을 걸어나아가야 한다. 문화산업정책을 제정하고 뒤떨어진 것은 편달하고 앞장선 것은 고무하면서 우승열태의 경제원칙을 구현하여 생기와 활력으로 넘치는 문화경영체제를 육성하는데 이로워야 한다.
3. 문화산업자체의 발전법칙을 지켜야 한다. 시장경제의 법칙을 따라야 할뿐더러 문화제품생산과 문화서비스의 특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체발전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문화를 돕고 부추기며 흥성하게 하는 것을 구현하여 문화산업의 자체 발전에 이롭고 문화산업의 “조혈(造血)”기능에 이로워야 한다.
4.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수준과 일치해야 한다. 문화산업의 산업규모, 발전수준과 운영 메카니즘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자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있다.
5. 문화산업은 분류가 같지 않기에 성질과 임무도 같지 않고 고상한 것과 저속한 것의 구분이 있으며 경영성과 비경영성적인 것이 있다. 문화산업정책은 이에 대하여 구분하여 대하고 분류하여 지도하는 원칙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고상한 문화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하고 고 품위의 문화이며 일부는 국가와 민족의 수준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문화산업정책상 중점적으로 부추겨야 한다. 통속문화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이 강하기에 높은 세금율의 문화산업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6. WTO의 문화산업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WTO는 관세 및 무역총액(GATT)을 기반으로 국제분업을 심화시킨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평형을 찾기 위해 조직된 글로벌경제무역조직이다. 다변무역체제 50년의 발전과정에서 세계무역조직성원들이 공동으로 수용하는 경제무역협정, 협의서를 형성했다. 주로 <세계경제무역조직의Marash협의서>, <관세 및 무역총협정>, <우루과이협의서>,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협의서>, <서비스무역협정>등이 있다. 이런 협정, 협의서는 글로벌 경제무역협작과 경쟁의 “게임 룰”을 공동으로 구성했다. WTO의 여러 가지 협정, 협의서는 문화산업의 각 영역과 널리 관련된다.

때문에 WTO의 기본원칙규정도 각 성원국가의 정부가 국내문화무역정책과 국제무역정책을 제정하는 서류 기초로 되고 있다 . 이는 기필코 해당 국가의 문화관리제도와 문화산업정책의 제정에 제도, 법률과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구성분으로 되는 명확한 목표를 표명했고 중국이 WTO기본원칙 및 해당 기초에서 건립된 국제무역제도, 법률체제와 정책시스템을 접수했음을 의미한다. WTO기본원칙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은 조정, 수정과 폐지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 법률과 정책 시스템의 플랫폼에서 중국의 특색을 가져야 할 뿐더러 WTO의 기본원칙정신과 일치한 정책시스템을 형성하고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국가의 통일적인 법률, 법규와 정책을 실행해야 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의 문화산업정책시스템을 재건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경제성분이 공동 경영하는 정책

오랜 시기 동안 중국은 분할과 업종장벽 및 단일한 투자 주체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시스템을 가진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도하는 산업정책체제가 형성되지 못했다. 정부문화관리부서는 문화의 관리모델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했고 업종지도와 관리가 부진한데 이는 문화산업투자주체의 다원화, 자유화원칙과 적응되지 않으며 선진적인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의 큰 흐름을 활성화하며 문화대시장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확장능력과 운영 메카니즘사이에서 침체한 대립을 이루었고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으로 되었으며 문화의 혁신능력을 약화시켰다.

다년간의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여러 분야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지름길이다. 국가의 중점보호, 지원이 필요한 문화항목과 부서를 제외하고 국가 정책이 허용하는 조건에서 나머지는 사회의 힘에 의존하여 흥성시켜야 한다. 국가, 집체, 개인과 외국자본과 함께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모델을 발전 개선시켜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경영방식의 시범을 적극 추진하고 군중의 혁신정신을 충분히 확신하면서 "3개 유리"한 원칙에 부합되면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부서와 지역, 업종의 한계를 벗어나고 사상과 관점상의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연합과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문화산업경영메카니즘을 활성화하여 문화산업의 흥성을 자극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분이 병존하는 것은 객관법칙이다. 문화산업은 여러 가지 경제성분이 경영되고 문화산업투자주체의 다원화와 자유화는 중국문화산업이 기동산업 혹은 선도산업으로 되는 중요한 조건이며 중국문화시장이 아시아 지어 세계문화거래대시장으로 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물론 여러 가지

소유제와 경영방식중에서 국가소유문화기업을 주체로 하고 비국가소유문화기업이 다원화 발전하며 사회의 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인도하면서 민영, 개체문화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계획적이고 합리하게 외자를 도입하는 구도를 지원하고 격려한다.

(가) 국가소유경제투자의 주체 지위를 확립

문화산업의 특수성은 국가소유문화기업이 전반문화산업발전에서 차지하는 주체 지위를 결정했다. 국가소유문화산업단위는 정부과 기업을 분리하여 국가소유문화산업단위의 재산권관계를 합리화하며 국가소유문화자산의 배치를 최적화한다. 정부는 문화산업투자영역에서 투자자의 신분으로 시장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납세인의 돈으로 납세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경우 정부는 문화산업투자영역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독점권은 없다. 국가문화주권과 문화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와 영역에서만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력에 따라 정부의 수준에 튼튼히 잡고 있을 뿐이다.

(나) 민영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

현단계, 정부의 힘으로만은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해 왔던 중국문화발전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과 관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대외로는 전면적인 개방에 적응하고 대내로는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충분히 통합시키면서 민영의 힘으로 “국퇴민진”을 정책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민영화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과거 오랜시기동안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던 책임과 서비스를 사회 민영의 힘에 넘기어 완성하게 하고 문화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정책 체제를 개선하고 대응한 문화투자체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완성한다.

문제의 관건은 시장 진출의 허가에 있다. 비문화시스템의 여러 가지시장주체 - 재단, 기업, 펀드 및 기타 합법적인 사회집단이 신문, 잡지, 출판, 영화 TV등을 포함한 문화핵심산업을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지분합작제 형식 혹은기타 투자 방식을 취해 원래 국가소유자산에 속해 있던 부분을 양도하고 기존의 불평형한 단극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경제이익을 조정하면서 원래 국가가 통제 한 부분을 절차있고 계획있게 사회의 민간자본에 양도해 주며 원래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부분의 문화권력을 민중에게 반환함으로써 민간자본, 민영역량과 정부 및 국가의 자본을 경제이익공동체로 조직하여 보다 많은사회역량, 민영자본이 문화산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결합하고 국가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게 보아야 만이 중국의 문화산업은 비로서 강력한 민족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퇴민진(國退民進)”문화산업의 민영화 전략을 실시하는

문화산업의 사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핵심부위에서 문화투자주체의 다원화, 사회화와 공공화를 실행하여 공공의 문화역량으로 중국문화산업발전의 새 구도를 구축한다.

때문에 기업, 사업단체와 개인이 문화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격려하는 정책을 출범하여 각 분야에서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이 문화기업에 대한 협찬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한다. 국가와 성, 직할시는 “문화사업의 사회기증기여상”을 설립하고 이 분야에서 뚜렷한 기여가 있는 기업, 사회단체와 개인에게는 정신적인 격려와 일정한 물질격려를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문화부문은 협찬업체를 위하여 일정한 문화서비스를 지원한다.

(다) 외자를 적극 이용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

개혁개방이후 외자와 외국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발걸음을 다그치는 기본국책으로 되었다.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자금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외자를 도입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중요한 경로로 되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의 정책을 개선할 것이 필요한 데 주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하다: 1)외국인단체와 우호인사, 해외 화교가 문화사업에 대한 자금 기증. 2) 외국에 있는 기구와 개인이 국가가 허용하고 창도하는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외국과 합작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도서를 출판하며 음반제품과 기타 문화제품을 제작하거나 문화공공시설을 건설한다. 4)문화관, 박물관 등 기구가 외자합자를 이용하여 고고발굴, 문물연구와 보호 등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 입각하면서 대외문화경영을 극력 발전시켜 대외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대외문화산업경영을 확장한다. 이를테면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교육과 과학기술 성과의 수출을 확대하고 대외상업연출을 발전시키며 도서와 영상음반제품의 수출을 증가하는 등이다. 조건을 갖춘 일부 문화기업 혹은 그룹이 외국에서 중국투자문화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산업부문이 대외대리, 경제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는 데 이를테면 대외대리공연, 전시 등이다. 대외경영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문화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개척 경쟁능력을 높여준다.

대형문화서비스기업의 양성정책

중국문화산업의 조직형식은 장시기 동안 소규모의 분산상태에 있었고 문화산업단위는 보편적으로 활력이 부족했는바 자주적인 경영, 자체로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며 리스크를 감당하고 자주적으로 혁신하는 시장 주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현대대형문화기업은 거의 없고 세계 500강 기업에 들어선 기업이 없다.

문화조직기구는 현재 문화사업단위와 문화기업단위 두개 부분으로 나뉘어 졌으며 현실생활중에는 반사업-반기업의 기구가 있다. 중국문화조직의 형식으로 볼 때 현재 3가지 문화조직형식을 모두 발전해야 하지만 그의 중점은 문화서비스기업이다. 문화서비스기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 데 한가지는 생산형으로 시장에 문화서비스상품을 직접 지원하는 기업이다. 다른 한가지는 중개형인데 생산과 소비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일으킨다. 문화서비스 기업의 구도를 살펴보면 소규모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은 중규모기업이고 대형기업은 수량이 적다. 현대경제는 대기업이 시장을 주재하는 경제이다. 통상 대기업은 튼튼한 자본과 상대적인 규모를 갖고 있고 기술우세와 문화우세가 뚜렷하며 현대화된 관리방식과 다차원의 인재대오가 있고 시장정보에 민감하며 경제효과와 경영효과가 양호하고 활동범위가 넓고 경쟁력이 뛰어난 바 국내외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다. 때문에 한개 업종, 지역, 국가는 자체의 기간대기업과 기업그룹을 갖고 경제와 시장의 기본 입각점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문화산업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형문화기업이 없어서는 안된다. 대형문화서비스기업이나 문화기업그룹이 시장경쟁에서의 발전 가능 여부는 실력에 있고 실력이란 기업이 발전중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서 구현된다. 대형문화기업 혹은 기업그룹은 경영의 다양화를 실행하는 바 생산제작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중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대형문화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키워야 하며 더욱이 높은 수준의 중개서비스 기업을 세우고 육성해야 한다.

우선 현단계 문화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단지 기존의 문화행정부서경영이 국유화 부분에만 집중된 것을 타개하고 문화투자주체의 다원화 분야에서 정책적인 사고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다채널의 투자체제와 효과적인 자금조달 메카니즘을 건립하고 재정, 세무, 신용대출과 가격 등 경제 지렛대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금투입방향, 산업구조와 전체적인 구조, 문화제품생산과 문화시장관리 등 분야에서 정책의 지도방향을 구현한다. 동시에 재정투입의 중점을 확립한다.

다음, 문화기업의 인수합병, 연합, 재조정 정책을 제정하고 전사회의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 문화산업그룹의 조직건설은 "작은 것을 모아서 크게"하고 저질자산마저 조합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자산, 기구, 인원, 설비에 대하여 철저한 정리를 거치고 업종, 시스템, 지역의 제한이 없이 인수합병, 연합,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업종내에서 win-win 연합을 할 뿐더러 전자, 통신, 자동차, 바이오공정, 컴퓨터등 과기함량이 높고 자산가치 증가가 빠른 시스템외의 기업그룹과 과감히 연합하고 인근省的 실력이 있는 기업과 연합하여 향후의 발전과정에서 "우세조합, 우세보완, 우세확장"을 확보해야 한다.

1.기업의 인수합병정책. 문화기업간 인수합병의 결과는 전반 문화산업내의 기업의 수량을 감소했고 기존 기업의 규모를 확대했다. 때문에 기업의 인수합병정책은 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대규모기업을 형성하고 시장집중도를 높이며 규모화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는 모두 이 산업조직정책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었다. 이를테면 20세기 60년대 일본은 무역보호체제가 자유무역체제로 과도하는 시기에 처했는 바 기업규모가 보편적으로 작고 규모경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기에 제품경영의 원가가 당시 선진국가의 수준보다 높았다. 아울러 대량의 소규모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기술진보와 경영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본기업은 강대한 국제독점기업과 경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근본상에서 개변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집중화를 실현했으며 규모경제의 유통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일본이 문화산업조직을 최적화하고 규모경제효과를 발휘하며 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2.기업연합정책. 연합의 긴밀한 정도에 따라 기업연합은 기업간의 분업협력관계를 전문화하고

기업그룹을 조직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전자는 경영업무를 뉴대로 하며 자산관계의 기업연합과 관계가 없고 후자는 자산과 업무 두가지 뉴대로 형성된 기업연합이다. 어떠한 기업연합이던지를 물론하고 모두 기업경쟁이 무질서 부터 질서있게 진행되고 분산으로 집중되고 과도한 경쟁을 적당한 경쟁으로 변화하여 규모화 경제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문화산업조직정책도 규모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데 속한다.

3. 경제규모와 직접 통제정책. 이 문화산업조직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통기업이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적당한 경쟁상태에 처해 있게 보장할 수 있다. 최소경제규모의 표준과 일부 경영상태(이를 테면 대형 출판업)의 기업은 경제규모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산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정부를 통해 규정한다. 동시에 문화산업이 대중형기업의 수량이 과다하여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형기업의 수량에 대하여 직접 통제하고 설령 일부기업이 최소규모의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정부는 그 기업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규모정책과 직접통제정책을 결합하면 기업이 유통산업에 진출하여 이중된 된 보루를 형성하여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있다.

셋째, 각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인프라가 훌륭하고 실력이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발전이

견전하며 국내외 수요가 많고 관련 산업과 주변제품을 견인할 수 있는 TV방송, 신문출판, 문

화엔터테인먼트 및 광고 전시업을 기동형문화산업으로 건설한다. 정부는 정책상에서 적극적으로
으로 추진하고 기동산업이 체제와 메카니즘 개혁분야에서 한걸음 앞장에 나서도록
지도하며
현대산업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구조를 조정하여 과학기술로 혁신하고, 문
화로 혁신하
며 경영으로 혁신하여 산업의 성장을 다그치고 3, 5년 사이 국내외에 영향력을 미치
는 문화산업센터로 건설한다.

지역별 민족문화특색의 정책을 발휘

중국은 지역이 넓고 민족이 많으며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특성이 각이하며
문화기반이 튼튼하다. 민족문화자원에 포함된 내용은 문학, 문자, 고적, 음악,
무용,예술 등 민족문화자원 자체와 관련되며 민족역사, 경제, 생태환경, 종교,
민족의약, 가정혼인제도 및 교육, 축제행사 등 민족문화는 불가분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 하지만 중국문화영역은 투자주체가 단일하고 업종제한이 과도하며 시장이
인재, 자금, 기술, 정보, 항목 등 문화원의 배치에 대하여 기초적인 역할을
일으키지 못했기에 문화자원의 적치와 낭비를 빚어냈다. 중국의 귀중한 문화자원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우대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민족문화산업의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가) 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촉진한다.

문화자원의 상품화는 각지의 문화특색을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색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살아서 숨쉬는 것임으로 특색이 확실하게
구현되게 해야 한다. 특색을 사회와 접목시키고 시장과 접목시켜야만 생명력이
있다. 특색과 혁신을 결합하여 혁신으로 특색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문화시장의 변영과 흥성은 실현될 날이 머지않다. 무겁고 가벼운것을
구분하여 문화산업화개발의 사고방향과 실시의견을 제출하고 민족문화가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보호를 받게 하며 민족지역이 빈곤을 벗어나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데 봉사한다. 문화자원의 보호, 개발과 이용정책을 제정하고 약간의
중대한 기초성문화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문화산업을 부추겨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문화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민족문화산업연합회 및 각급 각유형의
문화업종협회를 설립하고 업종 자율 메카니즘을 형성한다. 문화산업단위를
격려하여 대외합작과 교류를 강화하며 국내외 선진관리경험을 흡수하여
외향형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 문화산업중개대리서비스기구의 건설을 다그치고
연예시장매니저를 육성하고 대리회사를 발전시키며 문화 매니저, 독립제작제도와
프로젝트 건설 입찰공고제도를 건립한다.

(나) 정책지원과 정책지도를 강화

민족지구는 경제문화가 낙후한 지역으로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줄 것이 필요하다. 혁명구, 소수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한 지역을 부추기는 정책은 빈곤지역이 재정이체 결제, 세금면제, 이자 보조금 신용대출 등 분야에서도 일정한 시가의 우대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특수한 우대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통하여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이 조화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역의 자원상황과 기존의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본 지역의 자원개발이용 계획과 효과적인 조치를 제정한다. 민족구역에서 자원개발프로젝트의 투자를 우선 배치한다. 본지방자원의 개발이용권을 적당히 확대하고 우선 시범한 영역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조건이 있는 곳에서 시범구역을 배치하고 지역의 심사허가권한을 넓히며 연해개방지역과 평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원의 유상사용정책을 제정하여 자원에 대한 약탈식 개발을 철저히 바꾸며 자원의 집중개발과 경영을 추진하여 일부분 세무소득을 지방에 남겨주는 동시에 기업설립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지방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도한다.

(다) 경사진 재정과 세무, 금융정책을 제정

특색이 선명하고 문화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역이나 省, 市를 부추기며 문화산업이 서부개발에서의 역할을 높이 중시한다. 역사문화도시의 경제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역사문화도시가 각지의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기지로 되게 한다.

1. 세수우대정책

문화산업은 민족지역에서 약한 산업이기에 국가가 일련의 재무세금우대정책을 제정하여 부추겨 줄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드시 재정과 기본건설입찰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정하여 문화산업의 인프라시설과 표지성문화건축을 건설하는 데 이를테면 극장, 영화관, 전시관, 문화행사센터, 기념관등이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문화산업발전기금 이를테면 문화예술기금, 영화기금, 도서출판 등 기금을 설립하고 민족민간특색이 있는 음악, 희곡 등 예술부류의 창작 리허설을 장려하고 부추긴다. 중대한 소재와 우수한 극목의 창작 리허설에 장려와 지원하며 정부는 중대한 축제행사와 기타 공익성 공연의 프로젝트를 입찰공고형식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만들어 문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투자 혹은 대출 금리 보조 등 우대정책을 통하여 문화정보망의 건립, 문화산업그룹의 건립 및 그룹설비시설의 업데이트와 기술진보를 지원하면서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한다. 정부는 세율 차별화 정책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산업의 총량규모와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2. 투자·융자정책

여러 가지 사회자금이 문화산업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고 제한을 줄이며 비공유제경제성분이 문화산업영역에 투자하는 데 대한 제한을 취소한다. 외국자본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이용한다. 새로 흥기된 혁신성과 첨단과학기술성을 가진 문화산업항목에 대하여 정부는 일정한 정책성 대출을 배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저금리 혹은 금리보조 대출을 부추겨 발전시킨다. 문화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가소유비경영성 자산에 대하여 철저한 정리와 평가를 거친 후 자본금으로 산업에 투입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부는 문화산업발전기금과 문화자산경영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투자융자수단과 방식을 창조한다.

공익문화사업발전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투입력을 높인다. 각지 공익형문화사업의 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전문항목자금을 배치하며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과기관, 청소년궁, 체육장(관)등 공공문화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배포한 서류의 여러 가지 규정을 진일보 실천에 옮기며 공익형 문화사업건설의 재정보조정책을 제정하며 공익형문화시설건설과 운영중의 세금을 감소면제하며 문화기업사업 단위에서 상납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전액반환하여 문화사업건설에 사용한다.

투자·융자채널을 확대한다. 각급 정부는 공공재정으로 공익형문화건설을 지불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투입력을 높이며 투입의 성장은 같은 해 재정성장폭보다 낮지 않다. 재정자금이 문화산업영역에서의 투자액을 적당히 확대하고 사회자금의 투자흐름을 지도하며 국가자금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야 한다. 금융자금의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용대출자금의 투입을 인도하며 잠재력이 있고 효과적인 프로젝트의 대출액을 점차 증가한다. 국제금융자금이 문화건설에 투입하는 것을 널리 유치하며 외국자본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정부가 지불하고 사회가 협찬하는 방식으로 민족문화발전기금회를 건립하고 장대시키며 사회자금을 이용하여 운남문화투자공사, 문화자산경영공사등 기구를 설립하며 민족문화복권을 발행하고 문화산업그룹의 상장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토지, 세무 등 분야에서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수한 투자환경을 창조하고 각 분야의 힘을 유치하여 문화건설에 투자하거나 기증한다.

3. 혁명구, 소수민족 지역, 변강지역, 가난한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을

부추기는 정책

혁명구, 변경, 가난한 지역은 문화사업의 기초가 빈약하고 자금도 부족하다. 이런 지역에서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추진하며 빈궁하고 낙후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부양정책을 개선하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주어야 한다. “전국경제후진지역발전지원자금위원회”의 <경제후진지역의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방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로 빈곤을 벗어나는 것을 프로젝트에 편입시킨다. 국가에서 빈곤을 부추기는 기금에서 1%-3%의 금액을 단독인출하는 것을 중앙문화주관부서가 실시하거나 혹은 지방정부조직에 내려보내어 실시하게 한다. 이밖에 소수민족사업비, 변경건설사업비 등 국가 전문항목자금에서 3%-5%를 인출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건설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계획위원회는 기본건설계획에서 매년 소량의 자금을 인출하여 지방문화시설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지방재정도 “후진지역발전지원자금” 혹은 농업부가세중에서 일부분을 내어 농촌문화소의 건설과 군중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데 문화농촌진출행사와 “변강문화장랑”의 건설이 포함된다.

4. 특별비용지원정책을 시급히 제정하고 개선

소수민족지역의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정에서 일정한 자금을 인출하여 도와주고 해결할 것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다. 소수민족문자출판물의 출판, 인쇄와 발행은 특별비용을 두고 부추겨야 하며 혁명구와 소수민족지역, 빈곤한 지역의 신화서점건설에 특별비용으로 보조하고 혁명구, 소수민족지역, 변경, 가난한 지역의 도서관의 도서량을 점차 증가하고 풍부한 민족민간예술을 발굴하고 정리하며 편집하는 데 필요한 경비 관련 정책, 문화예술인재특별배양자금 설립 관련 정책, 변경항구지역의 영화관을 부추기고 농촌의 빈곤한 산지 주민이 영화보기가 어렵거나 민족언어 번역비용의 경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 정책, 우수극목의 창작과 공연을 부추기고 장려하는 정책, “3하향”에 필요한 경비 관련 정책, 문화시장정리정돈에 공을 세운 인원들에 대한 장려 관련 정책, 예술가의 정치생활대우를 실행하는 관련 정책, 문화예술과학기술진보와 혁신을 격려하며 문화과학연구와 문예이론연구자금을 설립하는 관련 정책, 문물보호법, 법정문유지보수법, 문물수집비용, 문물박물관 안전시설보조비투입 관련 정책, 역사문화유명도시는 도시유지보수비용의 3-5%를 문물의 보호 유지보수와 관리에 사용할 데대한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에서 사업비를 지불한 문화사업단위의 자체 사용가옥, 차량, 토지는 부동산세, 차량사용세와 토지사용세를 면제하며 각급 문화사업단위가 추진하는 문화산업경영항목에 대하여 세금면제와 대출우대의 관련 정책을 제공한다.